

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



2021년 1월 21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62호

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고 “경영기획부장”을 “미래기획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장은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사장 직속으로 미래기획부를 두고 경영시설본부 소속하에 경영지원부, 체육레저부, 환경자원부를 두고 도시교통본부 소속하에 교통관리부, 개발사업부를 둔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미래기획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경영지원부장, 체육레저부장, 환경자원부장은 경영시설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교통관리부장, 개발사업부장은 도시교통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사업부서의 장은 미래기획부와 경영지원부에 협조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1조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정원표

(단위:명)

총 계	임 원	일반직							업무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60	1	112	2	3	12	20	36	39	147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미래기획부) 미래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경영계획, 사업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가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 및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감사에 관한 사항
8. 법무(규정, 소송)관리에 관한 사항
9. 윤리 및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
10. 시설·환경 및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
11. 지시사항 및 업무보고(회의)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 노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및 기관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개인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9. 계약에 관한 사항
10. 보수 및 4대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체육레저부) 체육레저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광장,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소규모 체육시설, 송죽 다목적체육관, 초막골캠핑장 시설(이하 “체육레저시설”) 기본 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체육레저시설 허가에 관한 사항
3. 체육레저시설 입주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레저시설 관련 고객(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 체육레저시설 수입금 징수 및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6. 체육레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체육레저시설 운영관련 시설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8. 체육레저시설 관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근로(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체육레저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시외버스정류소,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이하 “교통관리시설”) 기본사업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관리시설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관리시설 차량 및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리시설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교통관리시설 고객(민원) 처리사항
6. 교통관리시설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관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관리시설 관리원 관리(근무명령 등)에 관한 사항
9. 공공근로(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통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제18조제1항의 “경영기획부”를 “경영지원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군포도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영기획부장”을 “미래기획부장”으로 하고 “경영지원부”를 “미래기획부”로 하고 제16조 “경영기획부”를 “미래기획부”로 한다.

②군포도시공사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1]의 “경영기획부(경영전략팀)”을 “미래기획부”로 하고 “청렴감사팀”을 “경영지원부”로 하고 사업부서 공통의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③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한다.

④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고 제27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경영기획부”를 “경영지원부”로 하고 제38조제2항 중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 ⑤ 군포도시공사 임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 ⑥ 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4항 및 제6항 중 “경영기획부”를 “경영지원부”로 한다.
- ⑦ 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0조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4항 중 “경영기획부”를 “경영지원부”로 하고 제48조 중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 ⑧ 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6]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 ⑨ 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 ⑩ 군포도시공사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83조제3항, 제189조제1항제2호
중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하고 제60조제3항 “경영기획부”를
“경영지원부”로 한다.
- ⑪ 군포도시공사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고 제3조제2호 중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 ⑫ 군포도시공사 차량관리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영기획부”를 “경영지원부”로 한다.
- ⑬ 군포도시공사 민원사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영기획부장”을 “미래기획부장”으로 한다.
- ⑭ 군포도시공사 제규정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영기획부”를 “미래기획부”로 하고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
으로 한다.
- ⑮ 군포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영기획부”를 “미래기획부”로 한다.
- ⑯ 군포도시공사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7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

으로 한다.

- ⑯ 군포도시공사 제안제도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의 “경영기획부”를 “경영지원부”로 한다.
- ⑰ 군포도시공사 내부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 ⑱ 군포도시공사 직원경고처분 등에 관한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영기획부”를 “경영지원부”로 한다.
- ⑲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경영기획부장”을 “미래기획부장”으로 한다.
- ⑳ 군포도시공사 공무국외여행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 ㉑ 군포도시공사 자금운용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을 “경영지원부”로 한다.
- ㉒ 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26조제2항, 제31조제2항 중 “경영기획부”를 “미래기획부”로 하고 제16조 중 “경영기획부장”을 “미래기획부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제2호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한다.
- ㉓ 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경영기획부장”을 “미래기획부장”으로 한다.
- ㉔ 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본부장”을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경영기획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 ㉕ 군포도시공사 사회적가치평가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영기획부”를 “미래기획부”로 한다.
- ㉖ 군포도시공사 부패영향평가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영기획부”를 “미래기획부”로 한다.

⑧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본부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기 획 부
입 안 자	직 성 명	경 영 기 획 부 장 이 현 동
	직 성 명	경 영 전 략 팀 장 박 인 회
	담당자 성명 (전 화)	이 태 권 (390-7615)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직무대행) 사장 유고 시에는 본부장, 경영기획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직무대행) ----- 경영시설 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미래기획부장-----
제9조(조직) ①사장은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본부장 소속하에 경영기획부, 체육문화부 교통관리부, 환경자원부를 두고 사장 직속으로 청렴감사팀, 개발사업부를 둔다.	제9조(조직) ①----- 사장 직속으로 미래기획부를 두고 경영시설본부 소속하에 경영지원부, 체육레저부, 환경자원부를 두고 도시교통본부 소속하에 교통관리부, 개발사업부를 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직무) ①경영기획부장, 체육문화부장, 교통관리부장, 환경자원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경영기획부에 협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청렴감사팀장, 개발사업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경영기획부에 협조한다.	제10조(직무) ①미래기획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경영지원부장, 체육레저부장, 환경자원부장은 경영시설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교통관리부장, 개발사업부장은 도시교통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미래기획부와 경영지원부에 협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제12조(경영기획부) 경영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지시사항 종합관리에 관한사항 2. 주요 공사 관련협의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사 홍보에 관한 사항 5. 고객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영개선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시설·환경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임직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11. 노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14.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15. 자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미래기획부) 미래기획부----- 1. 경영계획, 사업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가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 및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감사에 관한 사항 8. 법무(규정, 소송)관리에 관한 사항 9. 윤리 및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 10. 시설·환경 및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 11. 지시사항 및 업무보고(회의)에 관한 사항 12.<삭제> 13.<삭제> 14.<삭제> 15.<삭제>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경영기획부)</u> 경영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시사항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사 관련협의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사 홍보에 관한 사항 5. 고객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영개선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시설·환경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임직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11. 노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14.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15. 자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p><u>제13조(경영지원부)</u> 경영지원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 노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및 기관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개인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9. 계약에 관한 사항 10. 보수 및 4대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u>제13조(체육문화부)</u> 체육문화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광장, 복합생활스포츠센터, 소규모체육시설, 송죽다목적체육관, 초막골캠핑장, 기타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기본사업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2. 체육문화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체육문화시설 입주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문화시설 관련 고객(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 체육문화시설에 수입금 징수 및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6. 체육문화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체육문화시설 운영관련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8. 체육문화시설 관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근로(공의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체육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p><u>제14조(체육레저부)</u> 체육레저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광장,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소규모 체육시설, 송죽다목적체육관, 초막골캠핑장 시설(이하 “체육레저시설”) 기본 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체육레저시설 허가에 관한 사항 3. 체육레저시설 입주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레저시설 관련 고객(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 체육레저시설 수입금 징수 및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6. 체육레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체육레저시설 운영관련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8. 체육레저시설 관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근로(공의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체육레저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6조(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
1.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시외버스정류소,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이하“교통관리시설”) 기본사업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시외버스정류소,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이하“교통관리시설”) 기본사업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관리시설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관리시설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관리시설 차량 및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교통관리시설 차량 및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리시설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리시설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교통관리시설 고객(민원) 처리사항	5. 교통관리시설 고객(민원) 처리사항
6. 교통관리시설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관리시설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관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관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관리시설 관리원 관리(근무명령 등에 관한 사항	8. 교통관리시설 관리원 관리(근무명령 등)에 관한 사항
9. 공공근로(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근로(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통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10. 기타 교통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제18조(사무분장의 조정) ①부서 단위 소속직원별 사무분장은 해당 부서장이 정하고, 사무분장 결과를 경영기획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사무분장의 조정) ①----- ----- 경영지원부----- -----.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1]

직급별정원표

(단위:명)

총계	임원	일반직							기능직				업무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1급	2급	3급	
251	1	48	1	2	9	10	12	14	54	7	23	24	148

개정안

[별표1]

직급별정원표

(단위:명)

총 계	임 원	일반직							업무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60	1	112	2	3	12	20	36	39	147